

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
정비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장용대

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동의안은 2010년 5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및 조직·제도 변경에 따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정비 추진

3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를 비롯한 19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, 조직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일괄개정

4. 검토의견

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 및 조직·제도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직명칭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정비 추진을 위한 조례(안)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은

○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를 비롯한 19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, 조직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일괄개정

- 인용조문 변경 : 10개 조례

「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」, 「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」, 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, 「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」, 「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」, 「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」, 「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징수 조례」

- 조직명칭 변경 : 11개 조례

「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」, 「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」, 「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」, 「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」, 「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」, 「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, 「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」, 「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」, 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, 「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」, 「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」

-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조문 변경 : 1개 조례

-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직·제도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려는 조례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- 다만,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은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 시 부칙을 통하여 개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붙 임 :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